| 의안번호 | 제 4 호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심 의 | 2016. 10. 31. |
| 연 월 일 | (제 24 회) |

심의사항

정부R&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(안)

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 영 위 원 회

| 제 출 자 |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|
|-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 연월일 | 2016. 10. 31. |

1. 의결주문

○ 「정부R&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부처별로 상이한 R&D 관리규정으로 연구자가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여 반납하거나,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구수행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음
-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**부처별 상이한 R&D 연구비 관리규정을** 관리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하여 **통일**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현황 및 상이점

- 기본 틀은「과학기술기본법」,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(이하 '공동관리규정', 시행령) 및 시행규칙임
- 대부분의 부처는 R&D 연구비 관리에 있어 공동관리규정 및 범부처 일관된 기준인 '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'을 따르고 있으나.
 - 일부 부처에서 동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* 등에 대해 부처별로 훈령·고시 등의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어 상이하게 적용
 - * 공동관리규정 제34조는 부처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재량권 부여

나. 연구비 관리기준 통일방안(안)

- ◇ 연구자 입장에서 부처별 규정이 상이하여 불편한 사항을 통일
- ◇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 보장
- ◇ 연구비 관련 규정을 관리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

- □ 비목별 연구비 계상·집행기준 등 통일
 - (연구비 계획 변경 시 승인사항) 상이한 부처별 승인사항으로 인해 연구자가 수행과제의 부처별 기준을 각각 적용하여야 하나, 공동관리 규정 상 승인사항으로 최소화하여 연구현장의 행정부담 경감
 - (인건비) 부처별 상이한 프리랜서·개인사업자의 연구과제 참여기준
 및 인건비 지급기준, 학생연구원의 타 대학 과제 참여여부 등의
 기준을 통일하여 동일 연구원에 대해 범부처 일관된 기준 적용
 - ※ **프리랜서·개인사업자의 과제 참여 시 인건비 지급 여부**(국조실 규제개선과제)
 - · (기존) (프리랜서) 미래부: 가능, 산업부: 4대보험 가입시 가능 (개인사업자) 산업부: 가능, 미래부: 불가능
 - ▶ (개선)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모두 가능하도록 통일
 - (연구장비·재료비 등) 연구에 필요한 장비·재료 등의 구입으로 원활한 연구수행, 소속기관 내 전문가 활용*을 통한 융합연구 활성화 등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을 제고하고, 정산서류 최소화로 행정업무 완화
 - * 개인용 컴퓨터 구입,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기관 유형별 구분하여 통일
 - (연구수당) 연구원 단독 지급 방지 및 연구 기여도를 감안하되, 연구 수당의 지급범위* 현실화 및 지급기준 단순화
 - * 특정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이 편중되지 않도록 **연구자 1인에게 지급되는 상한** 기준(예: 50% 이내) 등 최소한의 기준 추가
 - (간접비) 영리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5%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되,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전문기관 승인시 10% 이내에서 증액사용을 허용
 - ※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출원 비용 부담 등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애로사항 지원

□ 표준매뉴얼의 실효성 제고

- 통일방안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, 전 부처가 공통으로 적용 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
- **표준매뉴얼을 이행하지 않는 부처**(전문기관)에 대해서는 차년도 R&D 예산배분·조정시, 기획평가사업 등의 예산삭감 등 불이익 조치

다. 향후 추진계획

- 공동관리규정 및 표준매뉴얼 개정 추진(~'17. 상반기)
 - * 미래부·산업부 등 R&D 주요부처와 협의하여 개정초안 도출 및 '범부처 연구 제도협의회'를 통해 개정안 마련·추진

정부R&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방안(안)

2016. 10. 31.

미래창조과학부

목차

| 1. | 추진배경 | 1 |
|----|----------------|---|
| 2. | 현황 및 상이점 | 1 |
| 3. | 기본방향 | 2 |
| 4. | 연구비 관리기준 통일 방안 | 4 |
| 5. | 향후 추진계획 | 9 |

1. 추진배경

- □ 부처별로 상이한 R&D 관리규정으로 연구수행에 불편함 지속 호소
 - 상이하고 복잡한 규정 및 하위 지침으로 인해 연구비를 잘못 사용하여 반납하거나,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 등의 징계를 받는 경우 발생
- □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연구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**연구비 규정의 표준화 및 단순화가 절실**
 - 18개 전문기관의 연구비 관련규정을 관리중심이 아닌 지원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 및 통일하는 작업이 우선 필요
- □ 이에「정부R&D 연구비 관리규정 통일 추진방안」을 마련하여 추진('16.9.2,
 전문기관효율화 특별위원회)

2. 현황 및 상이점

□ 현황

- 기본 틀은「과학기술기본법」,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(이하 '공동관리규정', 시행령) 및 시행규칙임
 - R&D사업이 범부처로 확대되면서 부처마다 연구개발수행 근거로 소관 법률과 시행령, 행정규칙을 보유
- 대부분의 부처는 R&D 연구비 관리에 있어 공동관리규정을 따르고 있으나, 동 규정이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*에 대해서는 부처별로 훈령·고시 등의 행정규칙으로 규정
 - * 공동관리규정 제34조는 부처에 세부사항을 규정할 수 있게 재량권 부여

□ 상이점

- 그동안 부처별 상이한 연구비 관리기준과 정산서류로 인한 연구현장의 혼란방지를 위해 **범부처 일관된 기준인 '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'**(이하 "표준매뉴얼")을 **마련・운영 중**("13.10~)
 - 18개 전문기관 연구비 관련규정의 비목, 세부 집행기준(계상기준, 정산 지침 등) 등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표준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나, 일부부처에서는 소관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어 상이하게 적용
- 연구비 비목(세목)별 계상·정산기준 및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부처별 연구수행주체의 기관특성에 따라 일부 상이한 기준 적용
 - (비목별) 인건비, 연구장비·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과제추진비, 연구수당 및 간접비의 계상·정산기준 중 일부기준 상이
 - ※ 비영리기관에 한해 해당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도 범용성 장비(개인용 컴퓨터) 구입 허용(미래부),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만 허용(산업부) 등
 - (계획 변경) 공동관리규정의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시 부처(또는 전문기관) 승인사항(5건)에 대하여, 일부부처에서 추가 기준 마련 적용

3. 기본방향

사업 관리규정의 통일 추진

| 상이한 부분을 찾아서 통일하고, 필요시 연구주체별로(비영리 vs. 영리 |
|---|
| 특성을 감안하여 통일 |
| 감사지적, 국회요구 등에 의해 불필요하게 들어간 부분은 협의를 통해 개선 |
| 우선, 연구비 규정과 증빙서식을 통일하고, 중장기적으로 정부R&F |

4. 연구비 관리기준 통일 방안

- ◇ 연구자 입장에서 부처별 기준이 상이하여 불편한 사항을 통일
 - 다수 부처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도 하나의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수행
- ◇ 연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에 자율성 보장
 - 단, 연구비 횡령, 연구목적 이외 사용 등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
- ◇ 연구비 관련 규정을 관리중심에서 지원중심으로 전환
 - 사후 적발이 아닌 예방 차원의 연구비 관리체계로 유도

■ 가. 비목별 연구비 계상·집행기준 등 통일

- ①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중앙행정기관(전문기관 포함)의 승인사항
 - ① (연구장비·시설비 변경시) 연구비 규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연구장비· 시설비의 계획 변경시 숭인을 받도록 통일하고, 단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 하여 연구현장의 혼란 방지

| 공동관리규정 (제12조의2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|---|--|
| ∘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 장비・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다른 장비로 변경 구입시 부처 승인 | ○ [산업부] 건당 3천만원 이상의 계획된 장비를 구매하지 않는 경우도 승인 ○ [미래부(ICT)] 단기금액이 3천만원(부기가치세 포함) 이상인연구장비 및 연구시설 비용의집행(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아니하였거나 사업계획서에포함된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과 다르게 변경하는 경우) | ○ 건당 3천만원(부가세 포함) 이상의 연구장비·시설비를 원래계획 없이 새로 구매 하거나, 계획된 장비를 변경 또는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 부처 승인 |

② (중소기업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시) 중소기업의 연구과제 지원 강화를 위해 도입한 신규 채용 인력에 대한 인건비 현금지원 제도의 실효성 제고

| 공동관리규정 (제12조의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·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시 부처 승인 | ∘ [산업부]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감액은 승인 사항이 아닌 반납사항 | 중소기업이 해당과제 수행을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의퇴사로 다른 신규인력을 충원 |
| | ∘ [미래부(ICT)] 중소기업이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인력의 퇴사로 인해 다른 신규 인력을 충원 하려는 경우 | 하려는 경우 부처 승인 |

③ (부처별 추가적용 사항) 정부 승인사항을 최소화하여 연구비 집행의 자율성 확대

| 공동관리규정 (제12조의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|
| | ∘[국토부] 당초 계획에 미 반영된 국외출장의 경우 및 국외여비 20% 이상 증액시 | ∘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|
| | ∘[산업부] 시간선택제 여성 연구원의 인건비 증액시 | |
| | ∘ [미래부(ICT)] 연구과제 추진비를 직접비의 10%이상 증액시 | |
| | · [중기청] 영리기관의 간접비 증액시 | |
| | © [미래부(과기 등)] 기초연구 단계의 계속 과제로서 해당 연도 직접비 중 불가피하게 다음연도의 직접비에 포함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등 | |

2 인건비

- ① (외부연구원 및 외부인건비 기준) 동일 연구원이 여러 부처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더라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명확한 원칙 설정
 - ※ (국조실 신산업투자위원회 규제개선과제) 일관된 정부연구과제 인건비 지급규정 마련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|------------|---|
| • (외부인건비)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 4대보험 직장 가입자에게 지급 ※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 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금 미지급 (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) | <=리랜서의 경우> | ○(외부연구원) 타기관 소속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되, •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 체결 후 참여할 수 있도록 통일 ○(외부인건비) 원소속기관 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 받을 경우 현금 미지급을 원칙으로 하되, •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수입 여부와 관계 없이 용역계약으로 보아 인건비를 현금 지급하는 |
| | 후 인건비 지급 | 것으로 통일 |

② (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과제 참여 여부) 범부처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여 협동 또는 융합 연구 활성화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∘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이 과제 참여시 외부인건비 지급 | ∘[산업부] 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과제 참여 제한 | ○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*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과제 수행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인정 필요 |

③ (인건비 계상기준) 부처별 연구과제 인건비 계상기준을 통일하여 연구 현장의 혼란 방지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|--|---------------|
| (인건비 계상기준) 연구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 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| ∘ [산업부ㆍ미래부(ICT)] 전년도 연말정산 급여총액 기준으로 계상 | ∘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|

④ (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) 부처별 인건비 현금지급 기준을 인정 하여 부처별 추진 정책을 지원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|--|---|
| ○ 인건비 현금계상 이 가능한 경우 -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연구원의 인건비 | - [산업부] 중견기업 포함 | ○ 부처별 추진하는 정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일 ▶ 중견기업 육성정책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 지급 |
| -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| - [산업부] ·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는 중소·중견기업 여성연구원 인건비 ·창업초기(7년 이내) 중소기업의 기존인력 인건비 ·중소·중견기업의 신규참여연구원 인건비 단큼기존인력 인건비 등 -[미래부(ICT), 산업부] 대학,국·공립연구기관 소속참여연구원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100% 인건비를지급받지 못하는 연구원추가 | · 표준매뉴얼에 모두 명시 하여 부처별 기준 안내 |

- ③ 연구장비·재료비, 연구활동비, 연구과제추진비
 - ① (개인용 컴퓨터 구입비)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원칙으로 하되, 연구기관 유형별 구분하여 통일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|--|---|
| ∘ (연구장비·재료비) - (개인용 컴퓨터) 비영리 기관에 한해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 인정 | ∘[산업부, 농림부, 중기청, 농진청, 안전처] 협약시 협약서에 명시한 경우 인정 | ○ (비영리기관) 공동관리 규정으로 통일 ▶ 계획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기준(자산 관리기준 등)에 따른 사용 허용 |
| | | ∘(영리기관)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인정 |

② (범용성 소프트웨어 구입비)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시 인정하되, 무분별한 범용성 장비 구입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통일

| 공동관리규정 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|--|--|
| ∘ (연구장비·재료비) - (범용성 소프트웨어) 연구 개발계획서상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부당집행 | ○[농진청] 계획서에 반영 되어 있으며,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는 경우만 인정 ○[산업부] 현금산정 불가 ○[안전처] 범용성 소프트웨어 | ∘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▶계획서에 명시한 경우 인정 |
| | 산정불가 | |

③ (시제품 등의 자체제작 비용) 시제품 자체제작 등을 위한 노무비 집행기준을 명확히하여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해결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|--|---|
| ∘ (연구장비·재료비) - (자체제작) 시제품·시 작품·시험설비 등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| ∘ [미래부(ICT), 산업부, 복지부, 안전처] 노무비 미포함 | ○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▶ 해당과제 참여연구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로 |
| 포함 | | 대상범위 명확화 |

④ (전문가활용비 사용기준) 융합연구 등 과제수행 시 소속기관의 연구자간 원활한 협력 지원 및 편의성 제고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|---|---|
| ∘ (전문가 활용비)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 | ∘ [산업부, 중기청, 안전처]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| ∘(비영리기관) 공동관리 규정으로 통일 |
| 단위 부서를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및 회의 수당 등 관련경비 | 불인정 ·[농림부, 국토부, 환경부] 구체적 지급기준 미 제시 | 소속기관의 최소단위부서를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 인정 |
| |) 제약 시합기군 이 제시 | (영리기관) 소속 기관을 제외한 관련분야 전문가 인정 |

⑤ (10만원 이하의 회의비) 소액 회의비에 대한 정산서류 간소화로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 완화

| 공동관리규정 (별표2-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-|---|---------------|
| (연구과제추진비)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| ∘[산업부, 안전처] 금액에 상관없이 내부결재 및 회의록 증빙 | ∘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|

④ 연구수당

① (연구수당 산정기준) 연구원 단독 지급 방지 및 기여도를 감안하되, 연구수당의 지급범위 현실화 및 지급기준 단순화를 통해 행정부담 완화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-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|---|---|
| • (부당집행기준) 연구수당을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 연구원이 단독으로 지급 받을 경우 | <추가기준> ○[산업부] 개인별 최고금액은 해당 연구원 인건비의 50%이내, 기술개발사업 여부, 평가결과, 최초 협약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 ○[산업부, 국토부]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%를 초과할 수 없음(단, 3인 또는 2인 이하는 제외) ○[중기청] 연구수당을 비영리 기관에 한해 계상 | ○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→ 단, 연구수당이 특정개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연구자 1인에게 지급되는상한기준(예: 50%이내)등 최소한의 기준추가 |

5 간접비

① (영리기관의 간접비) 중소·중견기업의 특허 출원 비용 부담 등 예상치 못한 현실적인 애로사항 지원

| 공동관리규정(별표2, 매뉴얼) | 부처별 기준 | 통일방안 |
|--|---|--|
| · (간접비 계상기준) 직접비의 | ∘[산업부] 10% 범위에서 | ∘ 공동관리규정으로 통일 |
| 5%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 • (부당집행금액) 연구개발 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| 계상 • [미래부(ICT), 산업부] 영리 기관에 한해 전담기관 승인시 계상기준 범위안에서 증액 사용 | ▶ 단,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 5%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하되, 전문기관 승인시 10%이내에서 증액 사용 허용 |

※ 이외 부처별 상이한 세부기준은 공동관리규정 및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작업시 부처협의를 통해 통일기준 마련

나. 표준매뉴얼의 실효성 제고

- 표준매뉴얼 이행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
 - 통일방안에 따라 표준매뉴얼을 개정하고, 전 부처가 **표준매뉴얼을** 의무 적용하도록 공동관리규정 개정 추진
 - ※ (예) 공동관리규정 제34조(세부규정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영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. (추가) 단, 연구비 관리에 대해서는 연구비관리표준매뉴얼을 따라야 한다
- 표준매뉴얼을 이행하지 않는 부처(전문기관)에 대해서는 차년도 R&D 예산배분·조정 시, 기획평가사업 등의 예산 삭감 등 불이익 조치

5. 향후 추진계획

- (규정통일 작업반*) 공동관리규정 및 표준매뉴얼 개정안 도출 ('16.11.~'17. 2)
 - * 미래부·산업부 등 R&D 주요부처 및 전문기관 관계자, KISTEP(지원) 으로 구성·운영
- **공동관리규정** 및 **표준매뉴얼 개정** 추진(~'17. 상반기)

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전략본부
과학기술정책관 연구제도혁신과
담당자 이선미 사무관
연락처 전 화: 02-2110-2731
E-mail: leesmi@korea.kr